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52호
2024. 2. 14.(수)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62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
--------------------------------	---

◆ 고 시

제2024-87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9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2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면제 할”을 “면제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별표 6 중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녹지 직렬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에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에,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별표 9의 비고 1.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를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9의2의 비고 5.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를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추가(제8조제3항)

- 응시수수료(6·7급 7천원, 8·9급 5천원)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추가

나. 신규임용 가산 대상 자격증 추가(별표6)

- 6급 이하 녹지직렬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다.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별표9, 별표9의2)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경력요건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도록 개정

라.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 추가(별지 제5호서식 추가)

- 응시원서 상 ‘탈모’ 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으로 수정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7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신규,변경,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재개발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변경제한면적의 제한기간 변경없음

라. 제한구역

1) '24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단위 : m²)

자치구	위치	금회 제한면적	변경제한면적		비고(이력)
			변경제한면적	신규제한면적	
구로구	개봉동49일대	54,947	20,910	34,037	' 22년 신통 미선정
구로구	오류동4일대	53,107	-	53,107	신규
금천구	독산동1036일대	79,036	-	79,036	신규
금천구	독산동1072일대	81,663	-	81,663	신규
관악구	신림동650일대	92,041	88,197	3,844	' 22년 신통 미선정
도봉구	창3동470일대	135,145	135,145	-	' 21년 신통 미선정 ' 21년 공공 보류

* 이전 미선정(보류)구역(건축허가제한 고시)이 선정된 경우, 미선정구역의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대상은 선정구역으로 제한대상등으로 변경됨(단, 제한기간은 변경없음)

2) '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확대)

자치구	위치	구역면적(m ²)	기 지정면적(m ²)	금회 제한면적(m ²)	비고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	74,390	72,533	1,857	구역계 확대
구로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141,203	140,696	신규 3,090 해제 2,583	구역계조정

3) '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

자치구	위치	구역면적(㎡)	금회 제한면적(㎡)	비고
마포구	노고산동 19-1일대	56,995.3	56,995.3	'23년 9월 신통 후보지 미선정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 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구역

1) 제한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 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2) 제한제외 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건축허가 등 제한(해제)

가. 해제사유 :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 이후 재개발 미추진

나. 해제대상

자치구	위치	금회 해제면적(㎡)	비고
도봉구	방학2동641 (방학1구역)	29.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8호(' 23.1.17.)로 제한된 필지 해제

※ 관련 고시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 22.1.26.), 제2023-28호(' 23.1.17.),
제2024-34호(' 24.1.12.)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도봉구 방학2동641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8(' 23.1.17.)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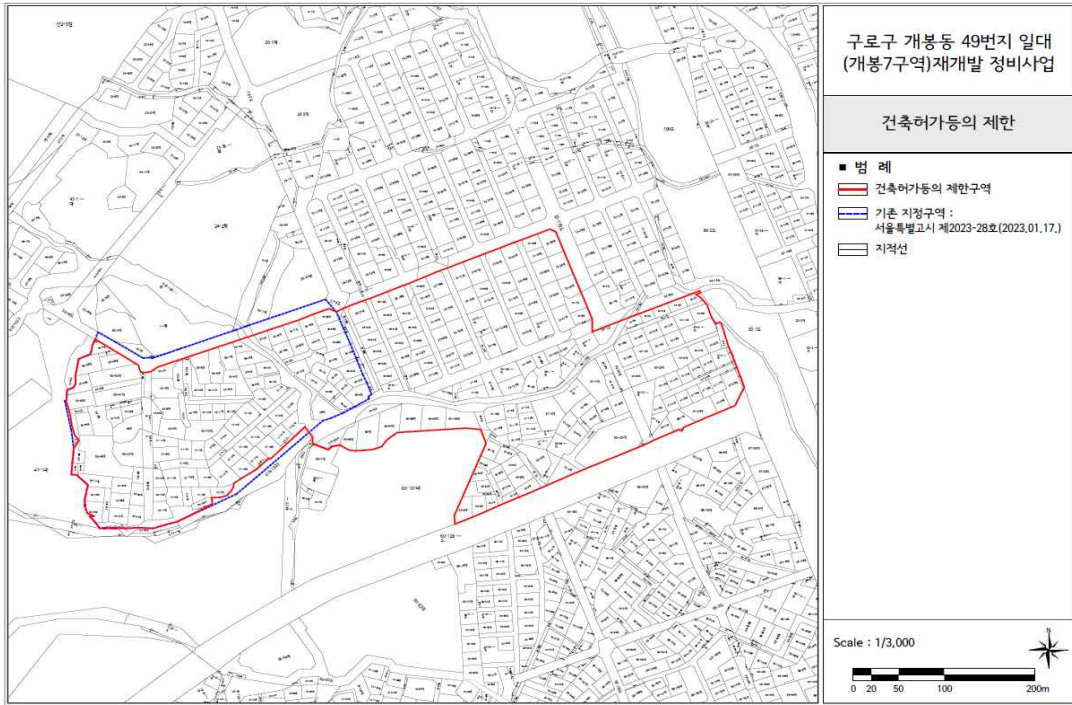
4.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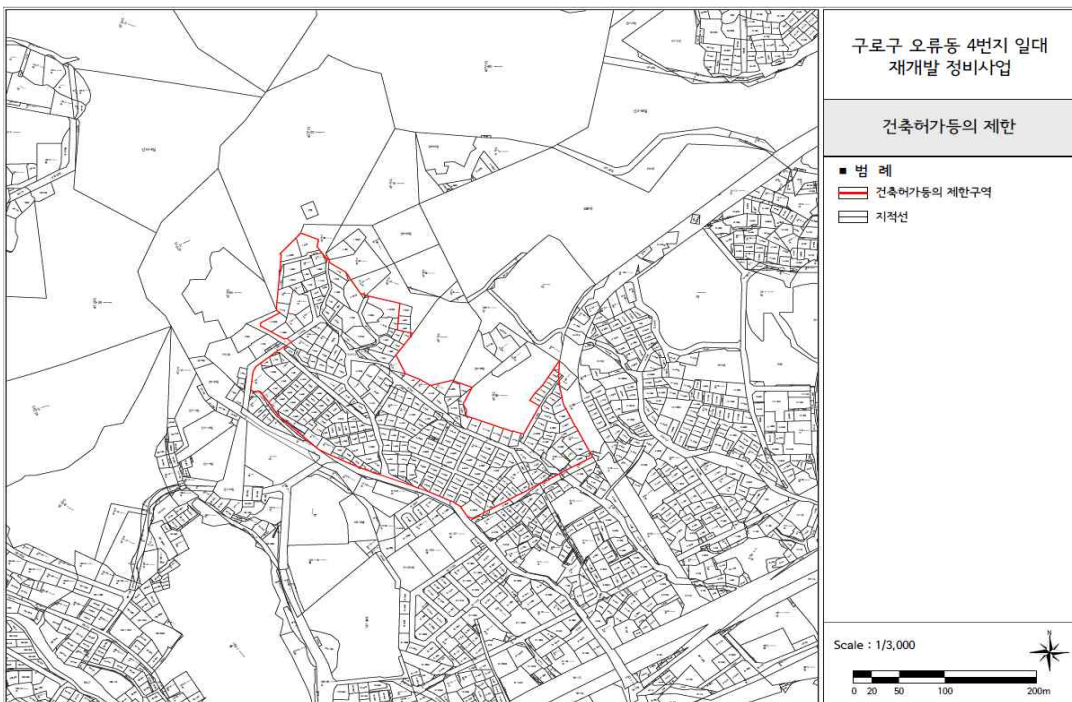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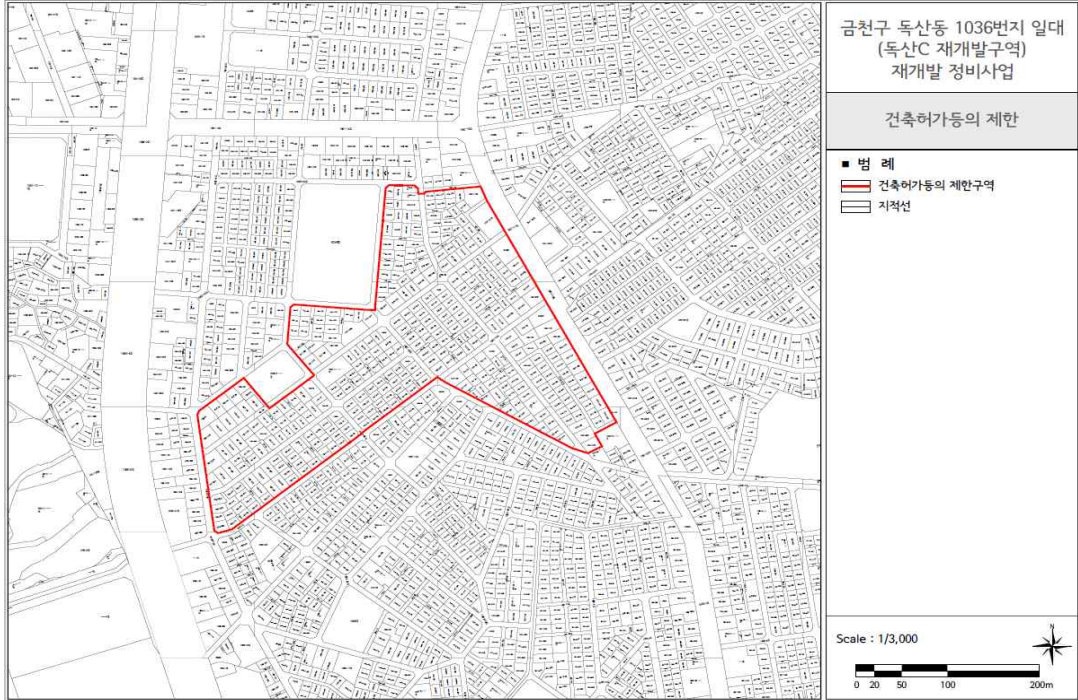
○ 구로구 개봉동49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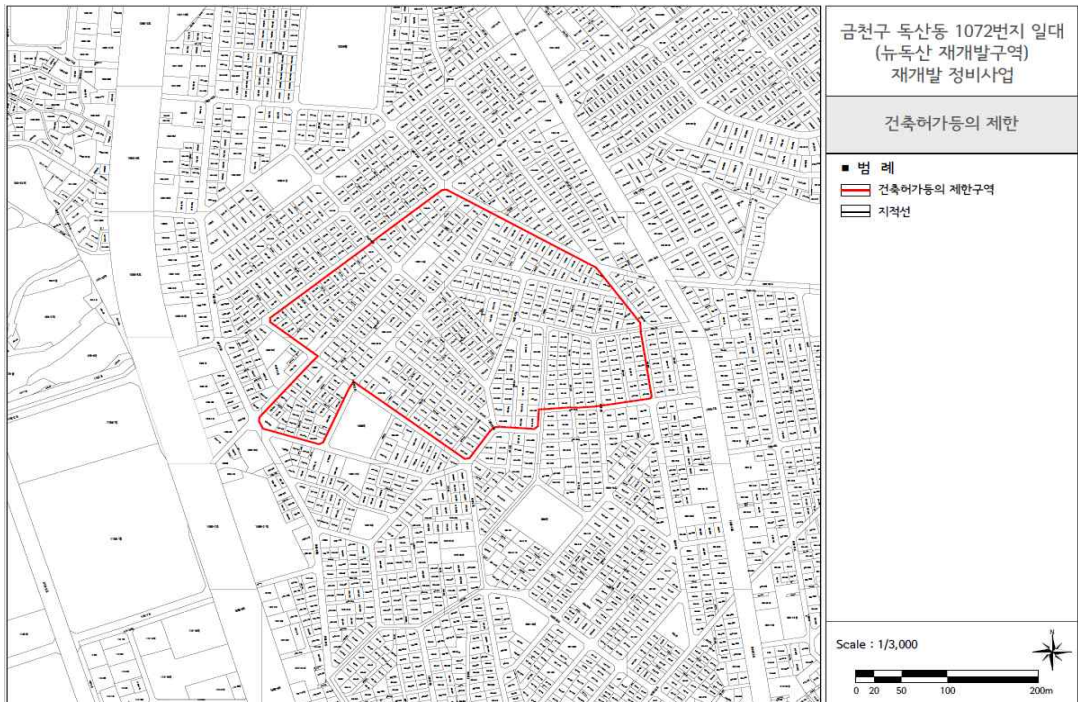
○ 구로구 오류동4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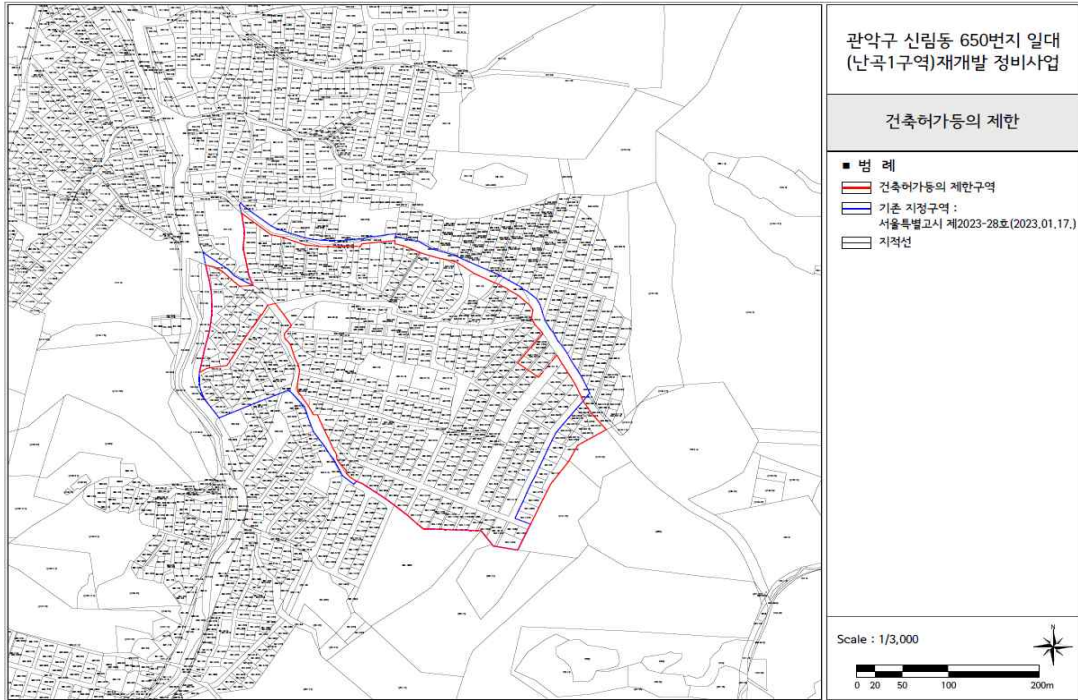
○ 금천구 독산동1036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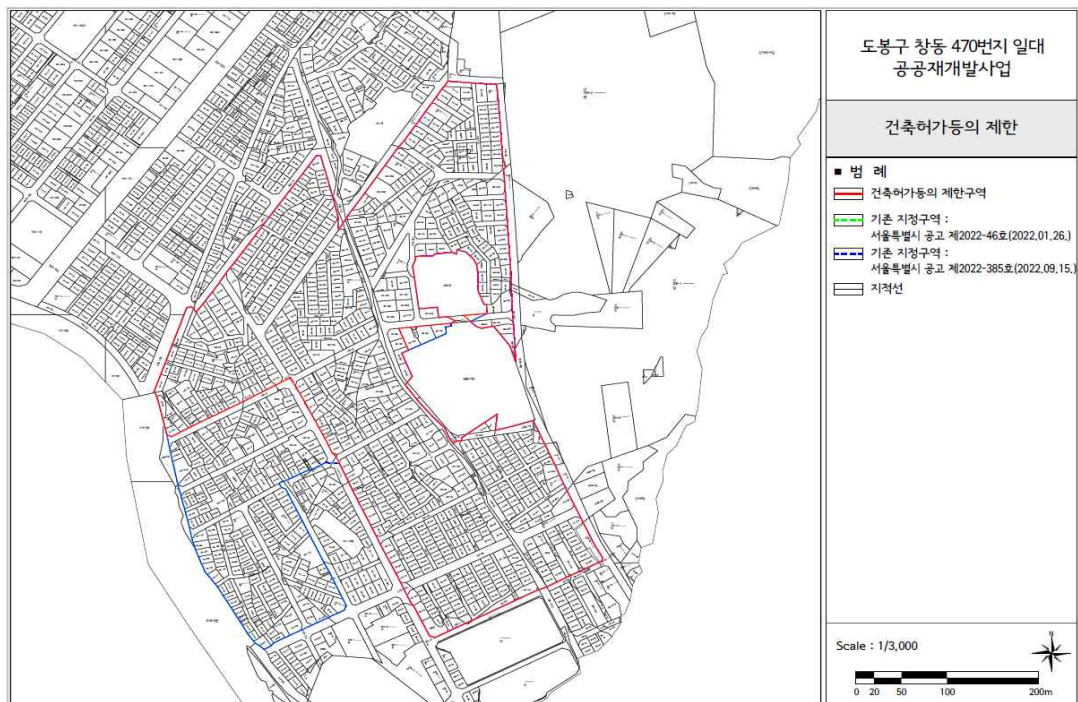
○ 금천구 독산동1072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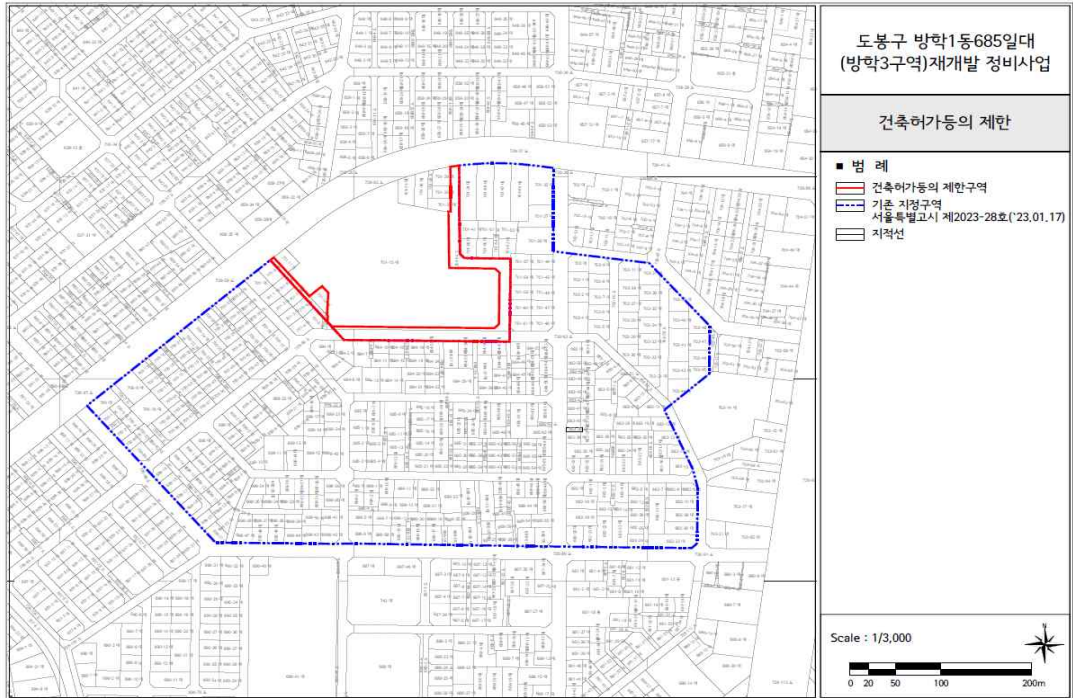
○ 관악구 신림동650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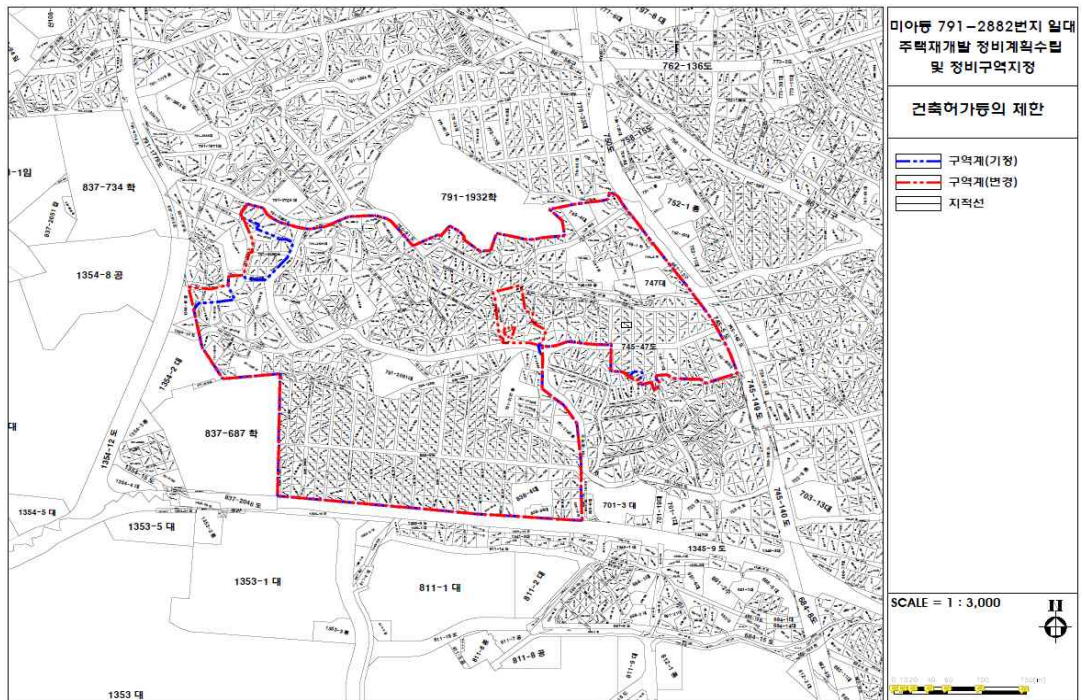
○ 도봉구 창3동470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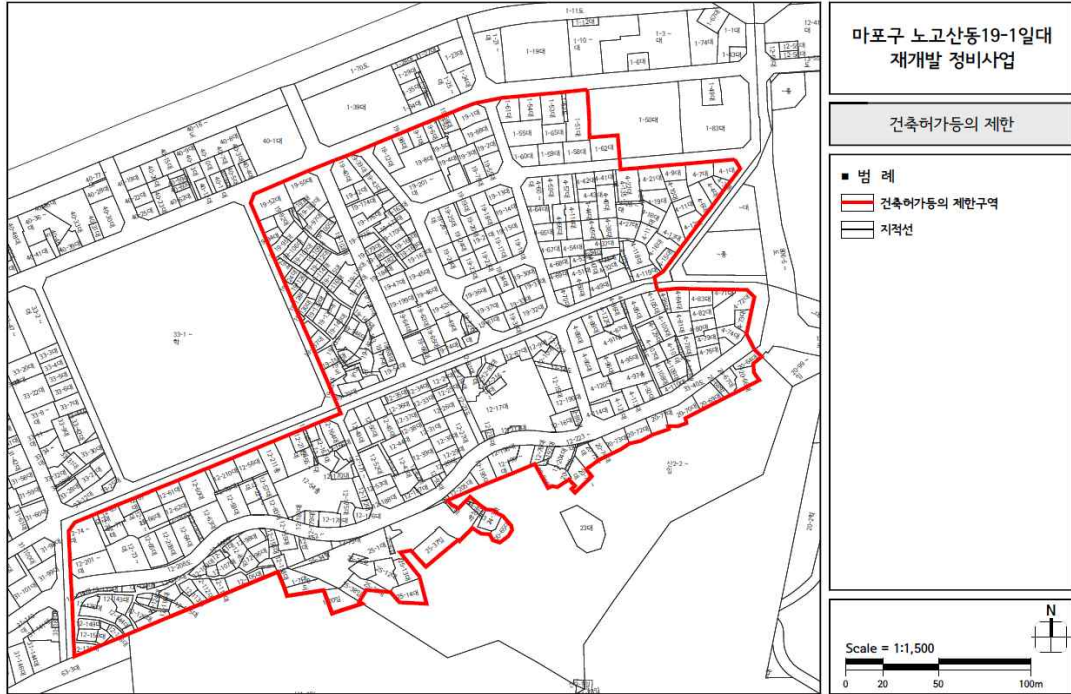
○ 도봉구 방학1동685일대



○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 마포구 노고산동19-1번지 일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